

주요국의 경쟁거리지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일본합성화학공업,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납부에 동의

일본 화학 제조업체인 일본합성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일본합성」이라 함)는 7월 14일 유죄를 인정, 17년에 걸쳐 식품보존료 산업에서의 경쟁을 억압하고 배제해 온 국제적인 공모에 대해 2천100만 달러의 벌금을 낼 것에 동의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단일 약식 기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7월 14일 일본합성 및 이 회사의 확인 케미컬 사업부 판매부장이었던 이토 히로미(伊藤博美)에게 이 회사와 기타 익명의 공모자가 판매한 솔빈산에 대해 1979년부터 1996년에 걸쳐 공모를 하여 그 가격을 인상 및 유지시키고 시장점유율을 배분한 것에 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 인기업에 대한 2천100만 달러의 벌금 이외에 이토 히로미도 유죄를 인정, 공모에서 그가 한 역할과 관련하여 3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에 동

의했다. 또한 일본합성과 이토 히로미는 정부의 계속적인 조사활동에 협력할 것에도 동의했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조엘 클라인 국장은 "미국의 소비자를 속이고 시장의 자유경쟁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모든 국제적 공모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솔빈산은 합성보존료로서 치즈 등의 유제품, 오븐에서 구운 식품이나 기타 가공식품처럼 주로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은 식품에 쓰여지고 있다. 전세계에서 연간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솔빈산 관련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합성은 솔빈산과 관련된 공모에 참가한 기업 중 벌금을 부과받은 세 번째 기업이다. 1998년 10월에 미국의 솔빈산 제조업체인 이스트 케미컬사가 동 공모에 참가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 1천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독일의 거대한 제약회사인 헉스터 AG사도 유죄를 인정, 3천6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동 공모는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의 거래에 대해 영향을 주었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의 스포라트 링 형사사건 담당 차장은 "본건은 믿기 어려운 만큼 장기간 계속된 국제적 공모이다. 또한 7월 14일 부과된

벌금은 미국의 소비자에게 이처럼 수년에 걸쳐 과대한 부담을 준 국제적 카르텔행위를 심사하고 소추하고 있는 우리들의 계속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일본합성 및 이토 히로미씨에게는 서면법 제1조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본 조항은 법인에 최대 1천만 달러, 개인에 최대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벌금은 공모자가 그 범죄에서 얻은 이익의 2배 금액 또는 그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2배 금액이 법정의 최고 벌금액보다도 큰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올릴 수가 있다. 법원은 미국 벌칙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적절한 형벌을 결정한다.

본건은 반트러스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사무소 및 샌프란시스코 FBI가 계속하고 있는 심사의 결과이며, 본건은 당초 FTC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 '99. 7. 14, 미 법무부 발표문

카르텔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미 반트러스트 당국에 타격

소비자용 제품 가격을 고정하는 외

국 카르텔을 단속하고자 하는 연방 반트러스트당국은 7월 19일, 법원이 북미 지역에서 판매되는 팩스용지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일본 기업에 대한 형사사건을 기각함으로써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한 격이 되었다.

법률전문가들은 당해 법원 판결은 국제 카르텔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은 주장된 위법행위가 미국의 상거래에 "실질적 영향(substantial effects)"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한 최초의 경우라고 하였다. 이 판결은 정부가 가격고정을 이유로 외국기업을 기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이 전문가들은 언급하였다.

보스턴 지방법원의 Nancy Gertner 판사의 의견은 "독특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뉴욕대 법과대학의 반트러스트법 전문가인 Eleanor M. Fox는 말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소할 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Fox 및 다른 전문가들은 연방검찰이 독점 및 시장조작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 반트러스트 형사법을 더욱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Gertner의 판결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약 30건의 대배심이 자동차에서 의약품에 이르는 제품 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한 국제적 카르텔 공모 사건을 조사중이다.

Gertner가 담당하였던 이번 사건은 외국기업이 전적으로 외국영토에서 행해진 위법행위에 대해 재판을 받은 첫 번째 경우였다. 이 사건은 일본정부의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는데,

동 정부는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통해 일본기업인 Nippon Paper Industries Co.에 대한 미국의 재판은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의 주권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제가 되는 행위는 1990년 10개 제지회사들이 도쿄에서 회합을 갖고 미국 및 캐나다에서의 팩스용지 가격 하락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루어졌다. 5년 후 미국 법무부는 위스콘신 주의 Appleton Papers Inc.와 일본의 Jujo Paper Co. - 1993년 Nippon Paper사와 기업결합하였음 - 및 기타 5개 일본 제지회사가 가격고정을 행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기소하였다.

Appleton Papers사는 1997년 밀워키 주 배심원단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5개 일본기업들은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Nippon Paper사는 법원에서의 무죄입증을 추구하였다. 1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 7월 배심원단이 기소내용에 대해 평결을 내리지 못하자 Nippon Paper사의 변호인들은 Gertner 판사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각을 청구하였다.

7월 19일 일반에 공개된 의견에서 Gertner 판사는, 당해 재판에서의 증거들은 비록 1990년 회의 이후 일부 용지가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보였지만, 일부는 변동이 없었고 기타 용지가 가격은 인하되기까지 하였다고 하였다.

O' Melveny & Myers 소속의 뉴욕주 변호사로서 Nippon Paper사를 대리한 Alan M. Cohen은 자신의 의뢰인이 "이 결과에 명백히 기뻐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가 왜 가격이 인상되었는지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

다. 그리고 이 가격인상을 공모와 연계시키는 것은 전세계 시장에서는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정부는 이제 실제로 법률적 쟁송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Cohen은 말하였다.

법무부 대변인인 Gina Talamona는 법무부가 Gertner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이 전세계 가격고정 업체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당해 사건을 소추한 것이라는 데에는 반트러스트 학자들간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한때 다수의 팩스기기 및 일정 의료 인쇄기에 사용되었던 광택 있는 특수용지인 팩스감열용지는 현대 사무기기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 '99. 7. 20, Los Angeles Times

E U

유럽위원회, 코카콜라사 압수수색 - 이탈리아 경쟁당국, 코카콜라사 영업관행 비난 보고서 발표

세계 최대의 청량음료 제조업체인 코카콜라사가 유럽연합의 3개국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유럽위원회 조사관들은 최근 이를 동안 새벽에 코카콜라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독일, 오스트리아 및 덴마크에서의 동 회사의 관행을 조사중인 관리들은 이들 국가의 코카콜라사 사무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담당 주요 비틀러

(bottler, 음료를 용기에 주입하는 업체)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영국의 코카콜라 사무실을 수색하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계 최대의 브랜드를 보유한 동 회사가 소매업체들이 판매량을 증대시키거나 코카콜라사 제품 일체를 취급하거나 경쟁업체의 음료판매를 중단하거나 할 때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이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는가에 대한 조사의 전단계이다.

당해 조사 소식은 지난 달 벨기에에서 발생한 코카콜라의 안전의혹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으며 유럽 4개 EU 회원국에서 코카콜라사의 청량음료가 회수된 상황에서 동 회사에 또다른 타격이 되고 있다. 또한 5월에 코카콜라사가 Cadbury Schweppes 청량음료 사업부문 취득계획을 유럽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유럽연합의 경쟁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가 이를 격렬히 비난한 이후 동 회사는 EU 대다수 국가에서 이 계획을 철회해야만 했었다.

동 위원회는 또한 지난 주 Stella Artois 맥주업체가 벨기에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서 세계 5위의 맥주업체인 인터브루사에 대해 새벽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코카콜라사는 "사전예고 없는 방문"이라고 묘사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으며 동 회사는 이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동 위원회 관리들은 7월 21일, 유럽 위원회는 코카콜라사에 대하여 전면적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사의

초기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동 위원회가 전면적 조사를 개시하여 동 회사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음이 밝혀진다면, 이는 관련사업 매출액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코카콜라사의 사무실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사의 제품을 병에 주입하는 회사들이며 코카콜라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3개 주요 바틀러 소속 사무실에도 진입하였다.

이들은 중부 및 동유럽 담당으로서 런던에 소재한 바틀러인 Coca-Cola Beverages사, 덴마크 맥주업체인 칼스버그사의 지배하에 있는 Coca-Cola Nordic Beverages사, 그리고 독일의 바틀러인 Coca-Cola Erfischungsgetranke사이다.

동 위원회는 소매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서면을 발송하였다.

관리들은 이러한 조치가 경쟁업체의 이익제기에서 야기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조사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세계 2위의 청량음료 제조업체인 펩시사와 영국 회사인 버진 콜라사가 몇몇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업체인 코카콜라사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초기 조사는 소매업체들이 매출액 및 성장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가 코카콜라사 전제품을 취급하기로 하거나 경쟁업체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업체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한편, 코카콜라사의 영업관행에 대한 14개월의 조사 끝에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8월 13일, 당해 대형 청량음료 제조업체가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소규모 경쟁업체들을 몰아내려 했으며, 이에 전 세계에서 주요 경쟁업체인 펩시콜라사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즈사가 입수한 번역본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1997년 및 작년도에 펩시콜라사와 이탈리아 수퍼마켓 체인점인 Esselunga SpA가 경쟁당국에 제출한 이의에서 촉발된 조사를 거의 마무리 짓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코카콜라사가 펩시콜라사의 신규거래 개설을 방해하고도 소매업체들로부터, 특히 소다수 통 관련거래에서 "펩시사를 배제하기 위해" 1997년 개시한 계획을 묘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조사과정의 일부로서 코카콜라사로부터 압수된 내부문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의 펩시사에 대한 "공격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다른 문제들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소다수 통의 배타적 거래의 대가로 코카콜라사가 제공하는 "남용적" 할인, 진열지역 확보에 따른 할인 및 연말 보너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는 이것들이 "코카콜라와 경쟁관계인 제품을 도매업체들이 유통시키지 않을 때에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Esselunga사가 코카콜라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였을 때 코카콜라사가 동 업체는 진열지역, 냉장고 및 기타 판매기법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음을 상세히 적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Esselunga사는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동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벌금은 이번 조사가 다루고 있는 기간 동안 코카콜라사가 이탈리아 지역에서 기록한 수입의 1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코카콜라사는 대변인을 통하여 "우리는 펄시사의 이탈리아에서의 저조한 영업실적은 이 지역에 대한 확고한 서약 및 투자의 부족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 결과 펄시사는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법정에서 경쟁하려고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상당부분이 수익성 높은 소다수 통 사업부문에서의 코카콜라사의 영업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사업부문에는 극장, 운동경기장, 식당 및 기타 광장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가 포함된다. 이 소다수 통 사업부문은 펄시사로서는 미국에서도 역시 고전하는 분야로서, 동 회사는 코카콜라사가 식품유통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부당하게 펄시사를 다수의 소다수 통 관련거래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작년도에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 시장은 코카콜라사의 판매체계 관행이 면밀히 분석되고 있는 일련의 시장 중 하나이다. 만일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유럽 전역의 다른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건 스탠리사의 음료산업 분석가인 Andrew M. Conway는 말하였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행은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서 코카콜라

사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데 대한 할인 등 소매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유럽연합 및 몇몇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기업은 이러한 관행이 소규모 경쟁업체들을 부당하게 배제하므로 이를 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Jones, Day 법률회사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Carsten Gromotke는 코카콜라사는 유럽 각국에서 적어도 4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럽 전역에 걸친 시장지배적 청량음료 기업임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위는 동 회사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소매업체들에게 리베이트 및 보너스 지급을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 '99. 7. 22, Financial Times & '99. 8. 13, The New York Times

EU, 과징금 상향 등 독점법 운용 강화를 일본에 요구

유럽연합(EU)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경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금지법의 재검토 및 엄격한 운용을 요구할 방침임을 굳혔다. 구체적으로는 ① 위반시 과징금 및 벌금의 대폭적인 인상, ② 유통분야를 중심으로 한 단속의 강화, ③ 외국기업이 입은 손해의 보상 등 3항목에 대하여 EU의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체제가 발족하는 9월 중에 일본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과의 사이에서 경쟁정책면에서 상

호간에 협력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교섭을 개시할 생각이다.

경쟁정책 분야에 관한 대일 정책방침은 새로이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몬티 위원이 유럽의회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명확히 하였다. 이 가운데 동 위원은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상당한 개선을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일본의 대응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현행 과징금 및 벌금은 카르텔행위의 경우 위반기간 중 상품·서비스의 매출액의 1~6%의 과징금과 5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몬티 위원은 「이러한 수준으로는 억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할 생각이다.

또한 일본기업의 담합으로 외국기업이 결과적으로 거래에서 제외된 경우 이 손해가 보상되는 경우는 적다고 되어 있어, 사법의 본연의 자세를 포함한 개선을 구할 방침이다.

EU는 미국과 캐나다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협정을 각각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지역과도 이러한 협력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99. 8. 18, 일본경제신문

영 국

영국 경쟁당국, 유니레버사의 아이스크림 시장 지배 규정책 고려

영국 경쟁위원회는 7월 20일 유니레버사의 아이스크림 제조 자회사인 Wall's 사에 대하여 유통사업부문을 해체하거나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등 동 시장을 경쟁업체들에 개방하기 위한 지배적지위의 일련의 시정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유니레버사는 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이다. 동 회사의 마케팅 관행은 영국 및 기타 유럽국가들의 경쟁당국,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반복되는 조사대상이 되어 왔다.

영국 경쟁당국이 유니레버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아이스크림 산업에서의 수직적 결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인데, 이 수직적 결합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유통망을 통제하고 경쟁업체들을 소매점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이스크림 시장의 시장교정 권고 내용에 뒤이어 다른 부문에서의 조치도 발표될 것인데, 이러한 부문에는 새로운 자동차의 공급이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이 포함된다.

작년 12월 이후 아이스크림 산업을 조사하여 온 동 위원회는 Wall's 사가 구축하고 있는 독점상태는 수만 개소의 소형 판매점으로 이루어진 유통망 장악에 기초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만일 동 위원회가 9월에 발표예정인 최종보고서에서 이러한 교정책들을 고수할 경우, 이는 1989년 맥주산업 관련명령에 의해 맥주업체들이 14,000개 주점을 매각하게 된 이후 소비재 산업 재구성에 관한 규제당국의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

3회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Wall's 사의 영국 시장 점유율이 증대

하자 동 위원회는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Wall's 사는 사업에 간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영국 일자리의 상실 및 영국에 대한 동 회사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여 왔다.

동 위원회는 5월 6일 현안문제 성명의 형태로 예비적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위원회는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즉석 소비용 아이스크림 공급에서 Wall's 사가 거대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동 위원회는 또한 Wall's 사, 그리고 Nestle 사 및 Mars 사와 같은 기타 제조업체들이 "복합 독점", 또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행위에는 자사 제품만을 위한 냉장고의 소매업체에의 공급, 경쟁업체의 제품을 진열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거액의 보너스 지급 및 권장소비자가격이 포함된다.

7월 20일 발표될 교정책에 관한 성명은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에에는 제조업체들의 자체 유통망이나 배타적 유통망의 금지, 배타적인 냉장고 공급 금지 및 경쟁업체 배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중단 등이 포함된다.

유니레버사는 이러한 가설적인 교정책에 대하여 논평하려 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전국적 승전망과 같은 필수설비에 관련된 경우에만 경쟁업체들에게 유통망에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경쟁업체들이 우리와 경쟁

하기 위해 Wall's 사의 Direct 유통망 또는 그 일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경쟁위원회의 산업 재구성 결정은 다른 규제당국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99. 7. 20, Financial Times

영국 개정 경쟁법, 카르텔에 대한 벌금 상향 예정

통상산업부 장관인 Stephen Byers 는 8월 9일의 발표를 통해, 새로이 성립된 경쟁법에 위반하여 카르텔을 행하다가 적발된 기업들은 최고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릴 것이다.

"우리는 경쟁이 경제 성장과 번영에 중요한 요소이며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여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 너무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Byers 장관은 언급하였다.

벌금에 대한 이러한 결정은 반경쟁적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기업들은 수천만 내지 수억 파운드의 벌금 - 현 법률 하에서의 최고 벌금액의 수배에 달할 - 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5년 동안의 경쟁법 개정 중 가장 대대적인 이 개정법은 가격고정에 대해 최고 매출액의 10%까지의 벌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Byers 장관은 최대 3년까지 위법사실이 행하여

진 각 연도마다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벌금액 수준은 강력한 정부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영국 소비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통해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 새로운 벌칙이 도입되면 비용을 부담하는 측은 법률을 무시하는 기업들이 될 것이다.”라고 Byers 장관은 언급할 것이다.

Byers 장관은 매출액의 정의를 영국 내 매출액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는데, 왜냐 하면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는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유럽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공정거래청(OFT)이 제출하였던 다른 대안보다는 덜 가혹한 것인데, OFT 안에 따르면 벌금 최고액은 위반이 행하여진 각 연도 매출액의 10%로서, 기간의 제한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Byers 장관의 제안은 경쟁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도보다는 엄격한 것이다. 유럽위원회가 부과하는 벌금액은 위반이 있는 해의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로 한정되어 있다.

관리들은 Byers 장관이 강화된 조사권한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벌칙이 필수적이라는 OF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각료들은 지나친 벌금이 기업들을 파산하게 만들어 주주들보다는 종업원들에게 타격이 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개정 경쟁법은 OFT이 조사 후 기업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정보 및

문서 제출 요구를 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적당한 인원을 동원하여 건물에 진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OFT가 카르텔의 외관을 보이는 행위를 조사하는 동안 관련기업들에 대하여 가격설정 정책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OFT 관리들은 반복된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들이 동법의 규정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 기업들은 준수 체계를 갖추지도 않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동 법은 작년 11월에 입법되었으나 대다수의 규정은 내년 3월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계 로비단체들은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체제를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나, 벌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부 기업을 파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99. 8. 9, Financial Times

일본

일본정부, 독점법 운용강화 지침 - 공익사업의 신규진입방해 억제

일본정부는 전력, 가스, 운수 등 공익사업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의 운용 강화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제1탄으로서, 통신성과 공정취인위원회는 연내이라도 전력·

가스사업의 적정 거래기준을 정한 공동 가이드라인(지침)을 공포할 방침이다. 지침에서는 기존의 전력회사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한 고객에 대하여 전력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독금법 위반의 우려가 강하다고 지적, 신규진입자에 대한 방해를 방지한다. 공취위는 내년 여름에 걸쳐 전력, 가스, 운수, 통신분야에 관한 내부의 독금법 적용기준도 작성, 경쟁제한에 제동을 건다.

전력사업은 이번 회기 국회에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2000년 초에 공장 등 대형이용자에의 전력공급 및 요금설정이 자유화된다. 실제로 석유회사, 대형 가스회사, 철강회사 등이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성과 공취위가 공동으로 정리한 지침은 신규진입자가 시장력이 강한 기존의 전력회사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공장이 전력회사와 신규진입자 양쪽에서 전기를 구입할 경우, 전력회사가 공급을 거부하고 공급원의 양자택일을 압박하면 독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규진입자와 계약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력회사가 할인요금을 제안한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인하가 문제인가라는 수치도 보이고 있다. 가스사업에서도 똑같은 지침을 작성한다. 업계감독관청과 공취위가 공동으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동시에 공취위는 전력·가스분야의 신규진입 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내부의 독금법 적용기준을 올 가을까

지 정리한다. 항공사업에 대하여도 현재 공항 이착륙대의 할당이 신규진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아 공정한 배분규칙 작성을 운수성에 촉구하는 외에, 스카이마크 에어라인 등 신규진입자를 겨냥한 항공요금 인하도 어디까지가 적법한가라는 수치를 정한다. 전기통신분야에 대하여도 주로 일본전신전화(NTT) 통신망에의 신규진입자의 접속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 '99. 7. 19,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치바 시 발주 4개 건설
영역사업 관련 292개 사에
배제권고**

치바(千葉) 시 및 동 시의 수도국이 발주하는 건설 컨설턴트 등 4개 업무를 둘러싸고 약 3년 만에 걸쳐 담합이 반복되었다고 하여, 공취위인 위원회는 8월 3일 건설 컨설턴트, 측량회사 등 292개 사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배제권고를 하였다. 한 번에 권고를 받은 업체수로서는 역대 최다이다. 공취위의 조사에서는 지명경쟁입찰 및 견적서 검토로 발주된 약 2,500건의 업무의 거의 전부에서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담합이 행하여졌음이 밝혀졌다.

권고를 받은 업체는 파스코, 응용지질, 국제항업(國際航業), 일본공영, 건설기술연구소 등 도쿄증시 1부 상장기업 5개 사를 포함하여 1도 2부 10현의 합계 292개 사이다.

조사에 따르면 담합이 행하여진 분

야는 건설 컨설턴트 외에 측량, 보상 컨설턴트, 지질조사이다. 어느 것이나 도로 및 상하수도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계획, 조사, 설계업무로서, 각 회사는 1995년 4월부터 1998년 9월의 사이에 영업활동의 실적 및 과거의 지명회수 등을 근거로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담합을 반복하여 왔다.

각 회사는 공취위가 작년 9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담합을 중단하였는데, 약 3년 반 동안에 이러한 업무의 발주건수 전체 중 수의계약분을 제외한 7할에서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며, 수주총액은 약 178억 엔에 달한다. 복수의 업무에서 담합에 관여한 업체들도 있어, 권고대상기업은 건별로 전부 합쳐 427사가 되었다.

파스코 등 5개 사는 「엄숙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금법 준수에 관한 사원 재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이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하여서는 권고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등으로 언급하였다.

■ '99. 8. 4,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쓰레기 소각로 담합에
대해 배제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소각로 입찰을 둘러싼 대형 공장건설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취위인 위원회는 8월 13일, 미츠비시 중공업(도쿄), NKK(도쿄), 가와사키(川崎) 중공업(고베 시), 히타치 조선(오사카 시), 타크마(오사카 시) 등 5개 사가 약 5

년간에 걸쳐 전국의 소각로 입찰에서 수주조정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배제권고를 하였다.

또한 원통형의 소각로에 들어가는 모래를 가열하여 태우는 중형로인 「유동상로(流動狀爐)」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명경쟁입찰에서도 수주조정의 의혹이 있다고 하여, 에바라(荏原)(도쿄), 이시카와지마하리마(石川島播磨) 중공업(도쿄), 미츠이조선(도쿄), 고베 제강소(고베 시), 가와사키 중공업 등 5개 사에 대하여 독금법위반 혐의로 경고하였다.

배제권고를 받은 이들 5개 사는 적어도 1994년 4월부터 1998년 9월까지의 사이에 계단형의 소각로에 쓰레기를 떨어뜨리면서 태우는 「스토커 소각로」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행정조직이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할 때 수주기회의 균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체들간의 사전접촉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였다.

이들 5개 사가 5년 동안에 낙찰받은 스토커 소각로는 합계 7기건, 약 1조 346억 엔에 상당하는데, 그 대부분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

이들 5개 사의 사전접촉은 지방공공단체의 건설계획이 판명된 소각로에 대하여 각 사의 환경플랜트 영업담당인 부·과장급이 각 회사의 회의실에 모여 실시되었으며, 과거의 수주실적으로부터 환산한 수치를 근거로 조정을 행하였다. 또한 이들 5개 사 이외의 공장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려고 한 때에는 이 회사에 대해 낙찰받지 못하도록 협력을 요구하였다.

■ '99. 8. 13, 요미우리신문